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2.16)

□ 배경

- 최근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 등의 곤충은 자연생태학습 및 애완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대두
 - 천적·화분매개에 곤충을 활용하는 등 곤충산업의 잠재 가능성은 높으나, 그 동안 제도적 법적장치가 미흡해 성장에 한계
-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공포됨으로써 곤충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·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

□ 주요내용

- (1)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투자계획, 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
 -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- (2) 곤충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기술개발 및 사육시설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화 촉진
 -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자체장은 곤충과 관련된 교육사업 등에 예산 지원
- (3) 곤충을 사육, 생산,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
 - 곤충의 무단방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시행

□ 양우 추진계획

- 동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은 6개월 내에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에 반영
- 곤충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종합육성계획 수립

<별첨>**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****1. 목적 (제1조)**

- 곤충산업을 육성·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

2. 정의 (제2조)

- (곤충)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반딧불이, 동애등애, 꽃무지, 뒤영벌, 그 밖에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
 - * (곤충산업)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. 곤충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(제5조, 제6조)

- 5년마다 종합계획*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 - * 곤충산업의 목표, 중장기 투자계획, 전문인력 육성방안, 지자체 사업 지원 방안 등 포함

4.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(제7조, 제8조)

-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
- 곤충산업관련 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

5. 곤충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벌칙 (제10조)

- 사육,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, 유통제한 및 폐기 명령 가능

6. 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,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 (제11조, 제12조)

- 곤충의 종류 및 사육 기준과 규격 등을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마련
- 곤충산업 종사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

7. 곤충산업 사업 수행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 사항 (제13조, 제14조)

-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 관련 교육사업, 곤충 기반조성(사육 시설 등 기자재 설치)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